

춘천지방법원 2023. 12. 20 선고 2022가단3565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## 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3. 6. 21.

판 결 선 고 2023. 12. 20.

## 주 문

1.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2018. 10. 18. 20,000,000원, 2018. 11. 5. 100,000,000원, 2018. 11. 6. 80,000,000원 합계 20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## 이 유

### 1. 전제된 사실

피고의 배우자인 B은 2014. 7. 30.부터 2014. 12. 8.까지 용인시 처인구 C 외 14필지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,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. 7. 31., 2014. 8. 31., 2014. 11. 30., 2014. 12. 31. 각각 성립되었다.

용인세무서장은 2015. 10.경부터 2019. 9.경까지 B에게 양도소득세 총 1,036,238,150원을 결정·고지하였다.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B의 체납세액은 총 1,554,317,970원이다(이하 ‘이 사건 조세채권’이라고 한다).

B은 D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18. 10. 18. 20,000,000원, 2018. 11. 5. 100,000,000원, 2018. 11. 6. 80,000,000원 합계 200,000,000원을 자녀 E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. 위 200,000,00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강원 홍천군 F 등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거나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라고 한다).

| 연번         | 거래일자       | 거래금액        | 수취인 | A 사용내역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일 자        | 금 액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          | 2018.10.18 | 20,000,000  | E   | 2018.10.22 | 13,000,000 | 계약금 이체<br>((계좌번호 1 생략) : G)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2018.10.23 | 6,000,000  | A 농협계좌 이체<br>(계좌번호 2 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2018.10.25 | 1,00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8.11.12 | 40,000,000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        | 2018.11.5  | 100,000,000 |     | 2018.11.19 | 81,157,698 | 취득 부동산 양도인의 근저당채무<br>상환액 이체<br>춘천축협(계좌번호 3 생략) |

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   | 2018.11.6 | 80,000,000  | 2018.11.19 | 44,842,302  | 잔금 이체<br>((계좌번호 1 생략) : G)      |
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2018.11.19 | 2,539,000   | 법무사 등기비용 이체<br>(농협 (계좌번호 4 생략)) |
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2019.1.1   | 3,000,000   | A 농협계좌 이체<br>(계좌번호 2 생략)        |
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2019.1.13  | 1,000,000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2019.1.20  | 13,000,000  | A 농협계좌 이체<br>(계좌번호 5 생략)        |
| 합 계 |           | 200,000,000 | 사용금액       | 205,539,00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한편 B는 2018. 10.경부터 2018. 11.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다.

| 증거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| 종류    | 내역             | 가액(원)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8.10.8.<br>2018.11.5.<br>2018.11.6. | 적극재산 | 부동산   | 경기도 광주시 H건물 I호 | 3,840,000       | 갑 제5호증<br>(채납자재산현황표 상<br>재산세납부내역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경기도 광주시 H건물 J호 | 4,620,000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경기도 광주시 H건물 K호 | 5,694,000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현금    | 투자 반환금         | 200,000,000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소계 ①  |                | 214,154,000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극재산 | 국세채무  | 양도소득세          | 1,546,841,070   | 갑 제1호증<br>채납유무조표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소계 ②  |                | △1,546,841,070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순자산  | ③=①-② | 적극재산 - 소극재산    | △ 1,332,687,07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해행위 | ④     | 피고에게 현금증여      | 200,000,000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채무초과 | ⑤=③-④ | 순자산 - 사해행위     | △ 1,532,687,07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### 가.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

앞서 본 바와 같이,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4. 7. 31.부터 2014. 12. 31.까지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, 2015. 10.경부터 2019. 9.경까지 결정·고지됨으로써 확정된 사실,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2018. 10. 8.부터 2018. 11. 6.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, 사해행위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.

### 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

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(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, B은 2018. 10. 8.부터 2018. 11. 6.까지 합계 200,000,000원을 자녀 계좌를 통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## 다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### 1) 피고 주장의 요지

B이 D과의 동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부동산은 B과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이었으므로, D으로부터 반환받은 투자금 200,000,000원 중 1/2은 피고의 재산이다.

또한 위 200,000,000원 중 140,000,000원만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, 증여액은 위 금액에 한정된다.

### 2) 판단

먼저 B이 D과의 동업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한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, 아니면 B의 특유재산인지에 관하여 본다.

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,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,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,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(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다42778 판결, 2000. 12. 12. 선고 2000다45723 판결,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B은 2014년경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한 용인시 처인구 C 외 14필지 중에서 일부 토지만을 매매로 취득하였을 뿐, 대부분 토지들을 아버지인

L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, 한편 피고는 199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17년 동안 속셈학원, 서점, 분식점 등을 운영하였으나 연 소득금액은 5,000,000원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용인시 처인구 C 외 14필지를 취득할 당시 그 대가를 상당 부분 부담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용인시 처인구 C 외 14필지가 B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음으로 B의 피고에 대한 증여액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140,000,000원에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.

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, 피고의 자녀 계좌로 입금된 200,000,000원 중 부동산 매수자금이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200,000,000원 전부가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#### 라. 원상회복의무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안석

1)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제1항에는 ‘2018. 10. 8. 금 20,000,000원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는 ‘2018. 10. 18. 20,000,000원’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선행하여 판단한다.